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24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일부 개정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 교통 통합심의하는 것에서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현행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업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 변경절차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통문제는 선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교통 유발 원인자인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사후 발생할 시민불편과 사회적 혼잡비용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